

# Yeosu Web Contents

2024년 05월 07일 00시 08분



# 목차

목차	2
등록현황	3
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	3

## 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

2014.04.17 조회수 598 등록자 박종일

관리번호	전라남도 여수시-2012-0044
담당부서	원도심개발과
상위법령	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
조례	여수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0조
유형	3호 - 금지(부작위)
등록사유	체육청소년
법령공표일	기존규제
존속기한	2009-05-19
규제시행/폐지일	2009-05-19
규제목적	자전거 이용의 활성화
규제내용	제20조(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) 시장은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10일 이상 같은 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이동·보관·매각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.
등록후변동결과	○ 2012. 7. 18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규제사항 등록

목록

이전글

전라남도 여수시-2012-0039

다음글

전라남도 여수시-2012-0048

# Yeosu Web Contents

